

「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현재 지원되는 전세금 융자금액이 부동산 시장 현실에 맞지 않아 지원대상자가 입주 대상지를 선정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상향조정(안 제16조제1항)
 - 당초 : 지원금액 1세대당 6천만원 이하
 - 변경 : 지원금액 1세대당 1억원 이하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주택법」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6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부동산 시장 현실에 맞게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액을 인상하여 지원대상자가 입주 대상지를 선정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